

2026 지역·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(기초이음 프로젝트) 서귀포 창업가·근로자 정주이음 지원사업 수시모집

(재)제주콘텐츠진흥원은 고용노동부,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서귀포시 내 창업가와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「2026 서귀포 창업가·근로자 정주이음 지원사업」의 참여자를 수시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6. 7. 1. (재)제주콘텐츠진흥원장

1 사업목적

- 서귀포시 창업가 및 근로자의 주거·교통 등 초기 정착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, 지역 내 창업과 고용의 지속성을 높여 서귀포 생활권 내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기여

2 사업개요

- 사업명: 서귀포 창업가·근로자 정주이음 지원사업
- 지원기간: 선정자별 지원개시월 ~ 2026.12.31.

※ 지원개시월은 제출서류가 모두 완비된 접수완료일을 기준으로 하며, 매월 15일까지 접수완료 시 해당 월부터, 16일 이후 접수완료 시 익월부터 지원
※ 자격유지 여부, 사업 예산 운영 여건에 따라 지원기간이 조정 또는 조기종료될 수 있음

- 지원규모: 100명 내외 (예산 소진 시까지)

※ 접수현황, 선정자의 지원개시월 및 잔여예산에 따라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

- 지원대상 ※ 기업이 아닌 개인(창업가 또는 근로자) 신청
- 서귀포시 소재 관광·콘텐츠 관련 기업 창업가 또는 정규직 근로자

구분	지원대상 자격요건
창업가	• 신청일 기준 서귀포시 소재 업력 5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※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(법인은 법인설립일) 기준으로 업력 판단
근로자	• 신청일 기준 서귀포시 소재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※ 업력 및 근로기간 제한은 없으나, 신청일 기준 정규직 재직 상태여야 함

- 지원내용: 주거비 또는 교통비 중 1개 항목 선택
 - 주거비: 서귀포시 내 임차 거주자 대상 월 40만원(정액)
 - 교통비: 제주시 → 서귀포시 통근 시 거리별 월 최대 40만원

3 지원내용 세부사항

○ 주거비 지원 ※ 서귀포시 내 이주자

지원대상 (공통)	①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제주시 또는 도외 지역에서 서귀포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자 ②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서귀포시인 자 ③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월세·전세·보증부월세·반전세 등 임차 형태로 거주 중인 자 ④ 임대차계약서 및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차료·보증금 지급내역 등을 통해 실제 임차 및 주거비 부담이 확인되는 자
지원금액	• 월 400,000원 정액 지원

※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계약, 실제 거주 및 실제 주거비 부담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, 부모·자녀·동거인 등 제3자 명의의 계약 또는 제3자가 주거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제외

○ 교통비 지원 ※ 제주시 ↔ 서귀포시 통근자

지원대상 (공통)	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제주시인 자 ② 제주시 거주지에서 서귀포시 소재 사업장으로 실제 출퇴근하는 자 ③ 거주지와 근무지 간 편도 실도로 거리가 10km 이상인 자												
지원금액	• 거리 구간 별 월 10만원 ~ 40만원 범위 내 지원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편도 거리 구간</th> <th>월 지원금액</th> <th>편도 거리 구간</th> <th>월 지원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0km 이상~20km 미만</td> <td>100,000원</td> <td>30km 이상~40km 미만</td> <td>300,000원</td> </tr> <tr> <td>20km 이상~30km 미만</td> <td>200,000원</td> <td>40km 이상</td> <td>400,00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편도 거리 구간	월 지원금액	편도 거리 구간	월 지원금액	10km 이상~20km 미만	100,000원	30km 이상~40km 미만	300,000원	20km 이상~30km 미만	200,000원	40km 이상	400,000원
편도 거리 구간	월 지원금액	편도 거리 구간	월 지원금액										
10km 이상~20km 미만	100,000원	30km 이상~40km 미만	300,000원										
20km 이상~30km 미만	200,000원	40km 이상	400,000원										

※ 거리 산정 기준 : 네이버지도·카카오맵 등 지도 앱 기준 '최장거리 경로' 적용
 (예시) 편도 39km(최단) ~ 51km(최장)의 경우, 최장거리 경로를 적용하여 월 400,000원 지원

○ 지원금 지급기준

지급 원칙	• 매월 자격유지 여부 확인 후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 ※ 서류 미제출·기한 초과 시 해당 월 지급 제한 또는 중단 가능
지원 전환	• 거주지 변경 등에 따라 주거비와 교통비 간 지원항목 전환 검토 가능
지원 중단	• 근무지·거주지·임차 변경, 폐업·퇴사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

4 신청자격 및 요건

- 기업 공통요건 ※ 창업가는 본인 사업체, 근로자는 소속 기업을 기준으로 함
-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귀포시이며, 다음 관광·콘텐츠 및 연계 업종 중 어느 하나를 실제 영위하는 기업이어야 함

관광 관련 업종	• 숙박·여행·관광운송, 관광지·문화시설 운영, 관광상품·기념품, 행사·축제·체험 등 관광서비스 관련업
콘텐츠 관련 업종	• 영화·영상·방송·음악·공연·전시·게임·애니메이션·출판 등 콘텐츠 기획·제작·유통업 및 광고·디자인·소프트웨어·플랫폼 등 콘텐츠 기반 서비스업
연계 업종	• 교육·체험, 번역·통역, 연구·컨설팅 등 관광·콘텐츠 상품 및 서비스의 기획·제작·운영·유통을 지원하는 업종
6차산업	•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인증기업 (※ 6차산업 인증서 제출 필수)

- ※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확인하되, 업태·종목 명칭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실제 사업내용이 관광·콘텐츠 분야와 직접 연계되는 경우 신청 가능
- ※ 음식점·카페·도소매업 등은 관광객 대상 서비스, 지역자원 활용 상품·체험 등 관광·콘텐츠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
- ※ 필요한 경우 기업 소개 자료, 누리집(포털 검색·SNS 포함), 상품·서비스 자료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

○ 개인 및 유형별 공통요건

개인 공통요건	• 대한민국 국적자 ※ 결혼이민자는 F-2, F-5 또는 F-6 체류자격 보유 시 참여 가능 • 사업 참여기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내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자 • 신청일 기준 국세·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
창업가 유형 요건	• 서귀포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실제 사업을 영위 중인 자 • 개업일(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일)로부터 5년 이내의 대표자 • 신청일 기준 4대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료 체납 없이 납부 중인 자
근로자 유형 요건	• 서귀포시 소재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•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사회보험에 가입된 자 •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, 2026년 기준 최저임금 이상 수령자 ※ 파견근로자, 기간제근로자 및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

- ※ 대표자 1인으로 구성된 개인기업도 신청할 수 있으며, 이와 관련하여 발급이 어려운 서류는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(별첨 참조)에서 정한 대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

5 신청서 제출 및 접수

○ 공고 및 접수기간: 2026.7.1.(수) ~ 2026.10.30.(금)까지 (수시접수)

- ※ 모집기간 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하나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
- ※ 약정체결 및 지원금 지급 가능기간 등을 고려하여 모집 기한을 조정할 수 있음

○ 접수 및 문의처: 이메일 접수(zbong0531@ofjeju.kr)

담당자	연락처	이메일 주소
콘텐츠인재팀 고지성 연구원	064-735-0615	zbong0531@ofjeju.kr

- ※ 제출서류 양식은 제주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
- ※ 방문 또는 우편접수는 불가하며, **이메일 제출 후 접수 여부 반드시 확인**

○ 제출서류: [별첨.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] 확인 후 작성 및 제출

기본서류	• 참여신청서, 지원사업 참여계획서, 참여제한 자가진단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자격확인 서류	• 주민등록초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유형별 추가서류	•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기타 공통서류 • 창업가·근로자 및 주거비·교통비 신청유형에 따른 추가서류 일체

- ※ 제출서류 누락, 서명 누락, 유효기간 경과 또는 식별이 어려운 자료 등 미비사항이 확인될 경우 진흥원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

○ 접수완료 기준

- 필수서류와 보완서류가 모두 제출된 시점을 접수완료일시로 함
- 최초 신청 시 서류가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는 해당 이메일 수신 일시를 접수완료일시로 적용함
-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종 보완서류를 완비한 시점을 접수완료일시로 적용함

- ※ 신청서 일부만 먼저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 순번이 확정되지 않음
- ※ 접수완료일은 지원개시월 산정, 접수완료일시는 지원대상자 선정 순번에 적용함

6 자격요건 검토 및 선정

- 검토대상: 지원자격 및 대상에 부합하는 창업가 또는 근로자
- 자격검토 방법: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기준 적합 여부 검토
 - 검토항목: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, 재직상태, 체납여부 등 공고상 자격요건 충족 여부
 - 검토절차: 접수 후 5영업일 이내 1차 검토, 필요 시 보완요청

※ 공고에서 정한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적격으로 판단하며, 하나 이상의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함

※ 기존 1·2차 모집에서 적용한 점수평가 및 외부 평가위원회 심사는 실시하지 않으며, 증빙서류를 통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만 확인(자격검토형 선정)

○ 선정방법

- 자격검토 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신청자를 접수완료일시(서류완비 시점 기준) 순으로 잔여 모집규모·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
-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대상 확정 전에 사업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, 차순위 적격자로 관리할 수 있음

※ 선정자의 참여포기, 약정 미체결 또는 자격상실 등으로 잔여예산이 발생하는 경우 접수완료 순번에 따라 차순위 적격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

○ 결과통보 및 약정체결

- 자격요건 적격 확정 시 개별 통보하며, 선정자는 선정통보 후 10일 이내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

※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적격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

7 기타사항

○ 지원제외 및 참여제한

- 다음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되며, 신청 이후 확인되는 경우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
자격미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업, 창업가·근로자, 주거비·교통비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• 기업 대표자와 배우자·직계존비속(부모·자녀) 관계인 근로자
중복·부정수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동일·유사 목적 주거비·교통비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 중인 경우 • 동일 주택(주소지) 내 동거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(※ 가구 및 주택당 1인만 지원 가능)
제한이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, 협약위반 또는 환수 미이행 등으로 참여 제한 또는 제재 중인 경우

○ 선정취소·지원중단·환수

- 아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 이후라도 해당 사안에 따라 제재 조치(향후 진흥원 사업 참여 제한 포함)를 취할 수 있음

선정취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출서류 또는 기재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• 신청자격 미충족 사실이 사후 확인된 경우 •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• 기타 본 사업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지원중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폐업 또는 퇴사 등으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• 거주지 또는 근무지 변경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• 실거주 또는 실제 근무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• 지원기간 중 이사, 퇴직, 휴·폐업 등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• 진흥원의 자료 제출 요청 또는 점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
환수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• 자격상실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지원금을 계속 수령한 경우 • 기타 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<p>※ 환수 통보 후 지정된 기한 내 미반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음 ※ 필요시 성명, 기업명, 위반내용 등 관련 사항을 진흥원 누리집에 게재할 수 있음</p>

○ 유의사항

- 본 사업은 「고용정책기본법」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수행됨
-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수정공고를 통해 안내 예정
-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봄